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71
----------	------

2025년 6월 20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05. 26., 이병도 의원 등 18명.
- 나. 회부일자 : 2025. 5. 29.
- 다.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5년 6월 2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요구,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징계대상 및 징계 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미비로 인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체 징계를 통한 자정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징계

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2023. 7.)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자정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정함.(안 제88조의2 및 별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6. 3.(화) ~ 2025. 6. 7.(토) (5일간)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의원의 법이나 자치법규 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두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윤리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음.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각종 의무 및 금지행위와 징계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각종 의무 및 금지 행위는 「지방자치법」 및 공직사회의 청렴에 관련된 상위법령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법」은 제44조에서 청렴 의무·품위유지 의무·지위 남용 금지·지위를 남용한 이익 취득 금지·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지방의회의원의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 32662호)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정하고¹⁾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하도록 함.²⁾

1)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2003. 5. 19. 시행)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0년 제정되었고, 동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개별 지방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2023)」, 2023, 3~4면 참조.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④ (생략)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2022년 제정되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등 각종 이해충돌 방지법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
-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들 상위법령에서 요구하는 의원의 각종 의무 및 금지행위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음.

3 징계기준의 마련(안 제88조의2 및 별표 신설)

- 한편, 「지방자치법」은 제11절에서 징계를 규정하며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징계의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명으로 구분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은 징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지방자치법」 제101조).
- 현행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의결 절차를 규정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음.³⁾
- 그러나, 본 개정안은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서 그 징계대상 행위별 구체적 징계기준은 다루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3)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로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제1항제7호의 행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결로 징계 가능.

-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 등에 각각 위배 되는 행위인 징계 대상 행위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회의규칙상 징계양정 기준 도입을 통해 각 대상행위 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음.

<안 제88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8조의2(징계기준) 의원의 법이나 자치법규 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 개정규칙안은 [별표]를 신설하였으며 각 위반행위(징계대상 행위)의 직접근거 및 참고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지방의회의원의 대표적인 의무인 품위유지의무·청렴의무 및 이해충돌방지 와 그에 따른 회피의무,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의무, 직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금지 의무 등 7개 행위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고 그 기준을 마련함.

<징계대상 행위 유형화(안 [별표] 신설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관련, 참고)
1. 품위유지의무 위반 (윤리강령 제3조)	○ 음주운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
	1) 면허정지	"
	2) 면허취소	"
	3)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범법행위(금고 미만 확정판결)	
○ 성폭력, 성희롱	(행동강령 제18조)	

2. 청렴의무 위반 (지방자치법 제44조, 윤리강령 제4조)	○ 직무 또는 직위 관련 금품수수 금지 1)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윤리강령 제6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청렴의무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청렴의무 기준) (행동강령 제11조) (윤리강령 제8조) (행동강령 제14조)
(지방자치법 제44조, 윤리강령 제5조)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권 개입 등 금지 및 대가 수수 금지 위반 ○ 알선·정탁(인사정탁 포함) 등 금지 위반	(행동강령 제8조) (행동강령 제6조) (행동강령 제8조)
3. 이해충돌 방지 의무(회피의무 등) 위반 (지방자치법 제44조, 기본조례 제34조)	○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위반 ○ 영리 행위 신고의무 위반 ○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회피 의무 위반 ○ 수익계약 체결 제한 위반	(기본조례 제34조) (행동강령 제15조) (행동강령 제7조) (윤리강령 제9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4. 각종 신고 의무 위반	○ 겸직 및 재산 불성실신고 ○ 겸직 허위신고(미신고, 허위신고)	(윤리강령 제10조) (윤리강령 제10조의2) (재산신고 - 공직자윤리법) (윤리강령 제10조의2)
5. 겸직금지 위반	○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금지 위반 ○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6. 회의 무단 불참	○ 정당한 이유 없는 회의 무단 불참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윤리강령 제13조)
7.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 직무관련 등을 행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	(행동강령 제10조의2) (행동강령 제10조의3)

- 대상 행위들은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위반금지 행위들임.
- 그밖에 징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본 징계기준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징계기준으로서 징계의결 및 윤리심사 과정에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종합검토

- 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명확한 징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심사와 징계의결 과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항목별 징계사유와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포괄적 판단기준으로 유사한 비위 유형에도 전혀 다른 수위의 징계를 받는 등 징계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반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것임.
-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징계기준은 「지방자치법」상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 이외에 구체적인 그 기준을 정하는 등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 연락처

02-2180-7688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7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이병도, 김성준, 박승진,
봉양순, 송도호, 오금란,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재란, 한 신, 홍국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요구,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징계대상 및 징계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미비로 인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체 징계를 통한 자정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2023. 7.)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징계결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자정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정함.(안 제88조의2 및 별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징계기준) 의원의 법이나 자치법규 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계기준(제88조의2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정지 2) 면허취소 3)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범법행위(금고 미만 확정판결) ○ 성폭력,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또는 직위 관련 금품수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권 개입 등 금지 및 대가 수수 금지 위반 ○ 알선·청탁(인사청탁 포함) 등 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이해충돌 방지 의무(회피의무 등)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위반 ○ 영리 행위 신고의무 위반 ○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회피 의무 위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각종 신고 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및 재산 불성실신고 ○ 겸직 허위신고(미신고,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5. 겸직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금지 위반 ○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회의 무단 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이유 없는 회의 무단 불참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7. 직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88조의2(징계기준) 의원의 법이나 자치법규 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u>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징계결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자정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